

언론윤리와 언론사내 자율규제에 대한 고찰

유재천
서강대 신방과 교수

1. 서론

누구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언론은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회제도이다. 언론이 주요한 사회제도인 까닭은 그것이 제공해 주는 정보가 다음과 같이 적어도 세가지 차원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정보는 개인의 차원에서 자아실현에 없어서는 안될 전제조건이 된다. 그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알려는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삶을 영위하고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도 그러하다. 자연환경과 문화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 같은 주변환경의 도전에 적절하게 응전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도 정보는 다양한 구실을 담당한다. 정보가 공개되고 유통됨으로써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며, 그것을 토대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토론과정을 통해 여론이 형성된다. 그와 같이 형성된 여론, 즉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사회통합의 메카니즘인 것이다. 정보는 또한 사회의 여러 집단과 계층의 가치나 규범을 반영하고, 그들의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원사회-개방사회의 존속과 번영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셋째, 정보는 또한 우리의 문화환경을 창출하며, 개인으로 하여금 문화향유의 기회를 갖게 만든다. 다양한 정보의 제공은 개인에게 문화선택의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정보는 그 자체가 문화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정보를 창출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언론이 얼마나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가 언론의 자유와 함께 책임을 강조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언론이 스스로 독립성을 유지하여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며, 그 자유를 책임 있게 쓰는 과업은 모두언론의 윤리에

포괄되는 문제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을 전제로 하고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은 언론의 과업과 관련하여 언론사 자체가 수행하는 자율규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언론과 윤리

역사적으로 언론은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나는 우리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는 보도의 기능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러한 일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해설해 주거나 논평하는 기능이다. 우리는 이 같은 언론의 기능을 통해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세계와 인간-을 인식하게 된다. 즉 우리는 스스로의 직접 체험을 통해 우리의 현실 혹은 환경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혹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현실은 언론이 제공한 현실이라는 인식을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언론 혹은 매스 미디어가 재구성한 현실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뜻이 된다. 우리가 언론이 제공하는 현실을 「유사환경」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언론이 얼마나 진실하게 현실을 재구성해 주는가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재구성해 주는가에 따라 우리의 현실인식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론의 윤리를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바로 그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언론이 직업윤리에 충실함으로써 진실한 현실의 재구성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자유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언론이 최소한 다음과 같은 관행에 충실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① 언론(미디어)은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에 관해 그 의미를 수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맥 속에서 진실하고 포괄적이며 이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언론은 정확해야 하며 지진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사실로, 의견은 의견으로 밝혀야 하고 되도록 사실과 의견은 분리시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보에 관한 진실」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② 언론매체는 의견과 비판의 교환을 위한 장의 구실을 해야 한다. 언론매체는 스스로를 공론의 공공전달자로서 간주해야 한다.

③ 언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다양한 집단의 대표상을 반영해야 한다. 언론은 모든 사회집단을 정확하게 묘사해야 하며, 그들에 관한 도식적 고정관념을 영속화시켜서는 안 된다.

④ 언론은 사회의 목표와 가치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회를 현실성 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⑤ 언론은 수용자로 하여금 일상의 정보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현대의 시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언론은 의견과 뉴스를 널리 전달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오늘의 언론이나 매스 미디어가 얼마나 충실하게 복무하는지는 의문이다. 다음과 같은 언론과 그 매체에 대한 비판이 그 같은 문제의 소재를 지적하고 있다. ① 언론은 매체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그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반대의견을 무시하거나 극도로 경시하고 있다.

② 언론매체가 대기업에 종속되어 흔히 광고주들이 언론의 정책이나 내용을 통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③ 언론은 사회변동에 저항하고 현상유지에 힘쓰고 있다.

4 언론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중요성이 있는 것보다 피상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더 많이 다루고 있으며, 오락물도 예술성이 없는 저급한 것이다.

⑤ 언론매체는 공중도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⑥ 언론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⑦ 언론은 「기업가 계급」이라 할 사회 경제적 계급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언론기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나 집단에 대해 기득권을 유지코자 함으로써 그들의 언론기업참여를 저지하려 한다. 그 결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상과 같은 비판은 언론이 공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의 언론이 본질적으로 직업윤리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언론현실에 대해 그 통제방식, 즉 언론으로 하여금 본래의 제구실을 다하게끔 만들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이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한 장치로서 정부에 의한 통제, 법률에 의한 통제, 공공에 의한 통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역시 언론에 의한 자율적 통제라고 하겠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즉 언론윤리란 사회공기로서의 언론이 공적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규범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윤리는 조직으로서의 언론매체가 준수해야 할 규범인 동시에 전문적인 언론인 개개인의 직무수행상의 규범이기도하다. 우리는 여기서 언론조직이 전문인 조직이며, 그것은 규범조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규범조직이란 통제와 복종의 관계가 공통된 규범과 가치관에 입각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같은 규범조직은 구조상 계서적 계층화(hierarchical differentiation)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상하급 자간의 권위와 복종의 관계가 공이상의 보상보다 전문인으로서의 공동규범과 가치관, 그리고 조직의 목적에 대한 공통성향에 바탕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전문조직 내에서는 일 자체에서 오는 본연의 충족감과 일에 대한 관심 및 참여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이러한 충족감과 참여의식은 조직 자체보다는 일 자체에 관련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즉 조직 자체가 전문인들의 준거가 아니라 전문직이 그들의 준거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규범조직으로서의 언론전문인의 조직은 일의 자율성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언론윤리의 준수는 마땅히 자율적 통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사회 혹은 공공이 언론에 대해 윤리에 충실할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타율에 의한 통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통제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상 일 그 자체에서 오는 충족감과 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전문직의 경우 자율에 의해서만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개별 언론사들이 자체의 윤리강령이나 방송강령 및 그 실천요강 등을 제정하고, 사내에 심의 실이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율규제를 행하고 있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고 하겠다.

III. 우리나라 언론윤리의 문제점

한국언론계가 자율적 통제장치로 마련한 윤리강령이나 실천요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제정되었으며, 또한 모범이 되는 것이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이라 할 수 있다. 이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1957년 4월 7일 제 1회 신문의 날을 맞아 선포, 채택된 것으로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한 것이다. 그 후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 (현 한국신문협회), 한국통신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추가 채택했다. 이 강령과 요강은 그 뒤 다른 매체의 윤리강령이나 실천요강의 기본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뜻이 크다 하겠다. 따라서 이 강령과 요강은 한국언론윤리의 기준이라고 보아도 잘못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윤리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언론윤리는 먼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누구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언론인들에게 있어 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왜곡과 남용을 낳는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책임을 행사할 수 없다.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의 개념은 직업윤리를 위한 관심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언론의 윤리로 무엇보다 먼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가장 귀중한 기본권을 옹호하는

것이 언론윤리의 토대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유의 향수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즉 언론의 공적과업 수행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언론윤리의 당위가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보도와 평론의 태도에 대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보도는 사실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출처 및 내용에 있어 보도의 가치가 입증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고 하는 동시에 평론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편파성을 배격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보도에서 중대한 오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강령에 따라 보도와 평론에 대한 기준이라 할 윤리실천요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보도는 평론과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집필자의 이름을 밝힘이 없이 개인의 의견을 보도에 삽입할 수 없다.
- ② 미확인의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때에는 그 미확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또 그것을 과대하게 보도해서는 안된다. 또 비공식이나 사적인 담론은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한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③ 사실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모와 의미를 포괄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특히 사실의 요약과 표제에 있어서도 사실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 ④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취재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 ⑤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보도를 했을 때에는 스스로 즉각적으로 이를 완전히 정정해야 한다.

셋째, 신문(언론)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편견의 지배도 받지 않아야 하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공익에 위배되는 개인의 이익이나 무가치 또는 부도덕한 목적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신문(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윤리실천요강은 다음과 같다.

- ① 보도 및 평론은 신문내외로부터 특권 또는 청탁 등의 압력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압력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기사가 억제되어서는 안된다.

② 기사의 작성 및 취사정리에 있어 정치상의 선입견 또는 특정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사실을 과장 또는 감살해서는 안된다.

③ 기사의 작성 및 취사 정리에 있어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유해한 것을 오직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대하게 보도해서는 안된다.

특히 외양 기타 부도덕의 과대한 보도로써 미풍양속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④ 어느 종교 또는 종파를 부당하게 공격하여 종교상의 증오와 분규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

또 어느 종족 또는 국민을 부당하게 경멸 또는 비난해서는 안되며 특히 내외의 국가원수의 명예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넷째, 윤리강령은 신문(언론)이 특히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타인이 주장하는 자유를 인정하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타인의 명예와 자유에 대한 윤리실천요강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이익을 위함이 아니고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또는 평론해서는 안된다

③ 형사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을 엄수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기소된 후는 경칭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④ 미성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및 복용한 부녀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⑤ 타인이 주장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록 자기의 관찰 또는 주장과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이를 편집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비판을 받은 자에게는 지면에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섯째, 신문인(언론인)은 높은 품격과 직업적 긍지를 지녀야 하고, 특히 저급한 행동이나 그 유인이 되는 행동은 일체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구체적 실천요강은 다음과 같다.

① 신문인은 그 품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강자에 영합하는 모든 언동을 피해야 하며 물질적 정신적을 막론하고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② 신문인에 대해서는 그 품격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제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③ 취재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특히 취재내용을 제공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취재내용 기사화 여부에 관한 언약은 이를 피해야 하되 만일 기사화하지 않음을 언약한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한 이를 지켜야 한다. 또 신문인은 기사출처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전직 후라도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4 신문·통신·잡지 등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전재 또는 인용을 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보도기사 사진 평론 등으로서 특정한 게재일시가 요구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⑤ 기자는 각 출입처에서 취재자유보장을 위한 것 이상의 목적으로 결속되어서는 안된다. 이상과 같은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 신문의 경우 윤리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를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신문윤리에서 가장 두드러져보이는 문제는 신문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격권 가운데서도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가 가장 심하며, 그 다음이 신용권의 침해로 나타나 있다. 이 점은 (표 1)과 (표 2) 및 (표 3)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표 1)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안들을 침해유형에 따라 분석한 것이며, (표 2)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 13년간 자체 심의에 의해 결정한 사례를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 따라 위반사항 별로 분류한 통계이다. 한편 (표 3)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자체 심의를 통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사례들을 위반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 이들 표를 보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사례가 지난 10여년 동안 거의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신문윤리위원회가 1961년에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¹⁾

<표 1> 침해유형

'81. 3. 31~'90. 7. 31

연도 \ 유형	명예 및 사생활	신용권 (재산)	저작권	계
'81년	23 (52%)	15 (34%)	6 (14%)	44
'82년	41 (82%)	9 (18%)	.	50
'83년	58 (82%)	13 (18%)		71
'84년	39 (72%)	12 (22%)	3 (6%)	54
'85년	44 (74%)	15 (26%)		59
'86년	25 (51%)	24 (49%)		49
'87년	39 (83%)	8 (17%)		47
'88년	36 (65%)	19 (35%)		55
'89년	87 (72%)	34 (28%)		121
'90년	73 (81%)	17 (19%)		90
계	465 (73%)	166 (26%)	9 (1%)	640

둘째, 미성년 피의자나 복용한 부녀자의 이름, 사진, 주소 등을 밝혀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표 2)와 (표 3)을 보면 그 같은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이 역시 신문윤리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변함 없는 추세로 나타나 있다.²⁾

셋째,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들 수 있다. 우리 언론의 불공정보도 사례를 분석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명쾌하게 그 정도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언론사노조들이나 혹은 노사합의체로 설치된 공정보도(방송)위원회, 민주언론실천위원회, 편집제작평의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공정보도를 위한 심의, 감시기구들이 불공정보도라 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례들을 보면 적지 않은 발생건수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³⁾

〈표 2〉 연도별 결정이유별 내역

이유별	연도별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4인방) '89	계
		報道와 評論의 態度章 위반(99)	오 보 과 장 보 도 왜 국	12	23	14	10	10	6	11	4				
他人의 명예와 自由章 위반(644)	불욕한어인신원공개	17	16	19	5	5	18	5	7	3	8	1	1	2	107
	미성년신원공개	10	5	1		41	97	60	71	25	24	8	21	3	366
	프라이비시침쇄	4	4	34	10	39	34	15	19	14	30	8	24	2	237
	편파 보도 명예훼손						2		1				4		3
品格章 위반(325)	소셜 통신 전 재 안화 사진 기타	46	37	44	17	14	30	18	12	5	2	7	3	4	239
	통신 전 재						35	5	5	18	3				66
	안화	1	1			4		2	2			1	2		13
	사진	9	1			1	1								12
報道基準 위반(68)	약명 공개	3	5		1	5		1	1			37	12	1	66
	침단체살용어		3	4	8	5	2	2			1			3	28
	용의자신원공개		1	1	1	10									13
	유괴자신원공개	1	4	2	3				1						11
	간첩신고자 공개 독립성-미봉양속저하				3								2		3
기(任)章 위반(22)			1	19	2										22
계		112	106	141	63	133	225	121	124	65	68	66	68	16	1308

〈표 3〉 시정권고 현황

(’81. 3. 31~’90. 7. 31)

* ’90년 6월 26일자 보도내용까지 시정권고한 것

구분	침 해 유 형 별				간 별				권고건수
	명예 및 사생활 침해	인간의 존엄 및 가치 경시	공중도덕 및 사회적 질서 저해	미성년 피해자 신원 공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통신	
연도									
'81년									
'82년									
'83년		3			1	2			3
'84년									
'85년									
'86년	3						3		3
'87년	6				3	2	1		6
'88년	25	8	1	3	29	2	2	4	37
'89년	88			92	173	1		6	180
'90년	89			95	178			6	184
계	211 (51%)	11 (3%)	1	190 (46%)	384 (93%)	7 (2%)	6 (1%)	16 (4%)	413

넷째, 이른바 「춘지」로 대표되는 언론인들의 품위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인들의 직업윤리 위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언론계 스스로가 자정운동도 전개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다섯째, 보도와 관련하여, 오보, 과장보도, 허위보도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사 속의 광고, 인용한 정보원의 이름 안 밝히기, 풍문의 기사화 등 언론의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조차 보인다. 실로 한국언론의 직업윤리가 위기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다. 윤리강령이나 그 실천요강은 이제 허위고백으로 전락했으며, 실천규범이 아니라 형식으로 남아있을 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언론의 직업윤리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우리는 언론사 자체의 자율적 통제를 기대하게 된다.

IV. 언론사의 자율적 통제 현황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설치하고 있는 자율적 통제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언론사노조 중심의 공정보도위원회와 같은 기구이며 나머지 하나는 심의실과 같은 부서이다. 먼저 노조 중심의 자율적 통제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현재 공정보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는 1989년 8월 16일 현재 49개사로 우리나라 62개 언론사(법인체별, 중앙 9개 종합일간신문사, 3개 경제신문사, 1개 영자신문사, 지방 24개 종합일간신문사, 24개 방송사, 1개 통신사) 가운데 79%에 이른다.⁴⁾

〈표 4〉 공정보도위원회 설치 현황 ('90.8.16.현재)

	노조및노사 합의체 2개 기구	노조단독기구	기 타
중앙지 보	경향신문, 동 아일보, 서울 신문, 한국일 보	국민일보, 세 계일보, 조선 일보, 한겨레 신문, 매일경 제신문, 연합 통신	중앙일보, 세 한국경제 신문, 코 리아 헤럴 드·내외경 제신문
지역신문 보	경주일보, 대 경일보, 매일 신문, 부산일 보	경기일보, 국 제신문, 경인 일보, 인천신 문, 전남일 보, 전북일 보, 제주신 문, 한라일보	충청일보, 무등일보
방 송 사	KBS, 서울 MBC, CBS 19개 지방 MBC		
계	30	14	5

〈표 5〉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주요규약내용

구 분	내 용
설 치	1. 조합장 직속으로 공정보도위원회를 둔다.
구 성	1. 감사 1~2명을 둔다. 2. 부간사와 4~20명의 위원을 둔다. 3. 필요시 비상임 위원을 둘 수 있다.
소 집	1. 매주 1회(일부사는 매달 1~2회) 정례회의를 갖는다. 2. 임시회의는 조합장 감사 또는 위원 1/3~1/2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임 무	1. 회사에서 발행되는 모든 매체의 취재 보도 제작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연구조사하며, 2. 운영위원회에 그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활동보고 서	1. 공보위는 매분기(일부는 매달 또는 격주) 1회 이상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

((표 4) 참조) 이 같은 기구는 공정보도(방송)위원회, 민주언론실천위원회, 편집제작평의회, 공정보도추진위원회, 공정방송추진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 기구들은 노조 단독으로 설치되기도 하며, 또는 노사합의체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언론사에 따라서는 이들 기구가 편집국장 등의 임면에 관한 투표관리를 담당하거나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공정보도를 위해 제작(편성)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이미 보도(방송)된 기사(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문제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기사(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그러한 관심사에 대한 편파보도가 주요 쟁점이 된다. 그 결과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야기되는 불만처리나 정정보도 등의 기능은 하지 않게 되며, 미성년자나 부녀자들에 대한 보호 등의 윤리적 과제도 제외되어있는 현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공정보도위원회 등이 다룬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같은 위원회의 주요 규약내용은 대체로 <표 5>와 같다. ⁵⁾

한편 언론사에 따라서는 심의부서를 독립된 기구로 설치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조사연구실이나 제작심의실, 기획실 등에 심의담당자를 두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부서나 심의담당자를 두고 있는 언론사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체심의의 기준이라 할 자사의 윤리강령이나 방송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고 있는 언론사는 극히 드물어 현재 한겨레신문사, MBC, KBS 등 3개사에 불과한 형편이다. 그 밖에 동아일보사와 중앙일보사, 조선일보사 등이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심의실을 설치하고 있는 언론사들 가운데서 KBS나 MBC의 경우는 방송법제 30조 제 2항에 방송순서를 심의하는 기구를 두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라 볼 때 자발적으로 심의를 위한 공식기구를 둔 언론사는 다만 몇 개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 중앙일보는 1989년 8월부터 신문심의위원실을, 한겨레신문은 1990년 10월부터 심의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심의실은 신문제작의 실무적 문제들, 예를 들면 오보, 기사누락, 편집, 기사작성 등을 비롯해 윤리적 문제-인격권 침해, 미성년자나 부녀자 보호, 정정보도, 반론권-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신문이나 방송제작, 전반에 걸친 자율적 통제를 행하고 있다 하겠다. 이 밖에 중앙일 보사와 같이 외부인사로 하여금 지면평가보고서를 작성케 하여, 이를 심의에 활용하고 있는 등으로 자율적 통제의 기능을 확대, 보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V.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언론의 직업윤리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언론의 윤리란 자율적 규범체계로 가치와 규범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가치의 측면에서 그것은 언론의 공적 과업의 목표와 연관되며, 규범에 의해 엄정한 관행의 지침을 스스로 채택한 것이다. 의사가 인간의 생명을 다루며, 법조인이 사회의 정의를 옹호한다는 면에서 엄격한 자기관리의 직업윤리를 스스로 채택하고, 그것에 충실해야 하듯이 언론 또한 사회현실의 재구성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언론자유를 위해서도 언론은 직업윤리에

투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율적 통제의 원리를 스스로 존중하는 데 소홀할 뿐 아니라 거의 무관심한 윤리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로 우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자율적 통제에 대한 언론사의 태만한 대응을 들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또는 신용권훼손 등에 대한 독자들이나 시청취자들의 불만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 언론사들이 자체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그에 준하여 자율적 통제를 행하는 심의제도의 도입을 불과 몇 개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론이 직업윤리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미나 일본의 언론사들은, 특히 우수한 언론사의 경우 자체심의에 대단히 충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일본 아사히신문은 독자홍보실을 두고 일상적인 기사의 심의는 물론 독자들의 불만처리에 성실하며 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신문제작에 반영시키는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신문은 독자홍보실을 부장급의 기자들로 구성하여 사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신문사 건물 1층에 배치해 두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심의에 의해 오보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즉각 정정보도를 해 주고 있으며, 독자들의 불만처리 역시 그와 같이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지방지인 북해도신문의 경우는 독자들의 불만을 청취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해 편집국내에 독자부를 두고 7~8명의 기자를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사에 찾아오는 독자들을 면담하기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언론은 이와 같은 선진 언론들의 직업윤리에 투철하려는 노력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독자나 시청취자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한 언론의 침해에 대해 용납하거나 묵인해 버리는 풍토는 이제 지났으며, 날이 갈수록 언론에 대한 수용자의 감시가 더 예리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언론사들은 직시하고, 직업윤리의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하리라고 믿는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각 언론사마다 자율적 통제를 위한 심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에서는 신문제작이나 프로그램제작의 실무적인 문제만 아니라 오보에 대한정정보도, 독자불만처리 등 보다 적극적인 직업윤리제고를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주

1) 유재천, 한국언론과 언론문화, 서울, 나남. 1986, pp .205~ 220.

2) 같은 책, PP. 205~220.

3) 언론사 공정보도위원회 현황, 「신문과 방송」, 1989년 9월호, 한국언론연구원, PP. 46~52

4) 신문과 방송, 1989년 9월호, p. 46

5) 신문과 방송, 1989년 9월호, p.47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졸,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매스컴 전공)

□ 저술: 「한국의 언론」 (1958, 공저). 「현대 사회와대중문화」 (1975. 공저) 「인류의 미래상」 (역서) 「한국언론과 언론문화」 외

□ 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계위원회 중재위원